<뉴스 바로 보기 7주차 과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컴퓨터공학과

20180976 김혜인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footnote-1)은 공직자가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 책임이 서로 부딪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 처벌 규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8년 전인 2013년 발의되어 지난 8년 간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9년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박덕흠[[2]](#footnote-2), 윤창현, 윤영찬, 추혜선, 손혜원, 전봉민 등등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으로 연일 오르내리고,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음이 드러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3]](#footnote-3)은 LH 사태와 관련된 제도개혁 작업에 속도를 붙이면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에 대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게 입법이 진행되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취지에는 찬성하나 졸속처리는 안된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하면서 3월 내 신속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정의당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열린민주당 등 소수정당들도 법 제정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여당이 제안한 법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 신속 입법 되지 못한 주요한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더불어민주당[[4]](#footnote-4)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직자로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까지 포괄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4명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 공직자에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사적 이해관계 대상자가 광범위한 언론인의 경우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법 적용 대상을 늘렸다가 실효성을 떨어뜨려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는 김영란법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김영란법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김영란법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높여가는데 논란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이해충돌방지법도 사전적 방지를 위해 광범위한 적용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이 쟁점에 대해 4월 12일 오전[[5]](#footnote-5)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포함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면서,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고위공직자 이해방지법의 4원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적이익 취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일 경우 사익추구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 때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쟁점이 있었다. 직무상 비밀이 현재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보면 아주 좁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이 비밀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비공개 정보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의 결과로 4월 13일[[6]](#footnote-6)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적이익 취득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뿐 아니라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의 이용도 금지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제 3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3)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다.

4) 소급입법

소급 적용은 LH 신도시 투기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등의 이익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진정 소급으로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는 것을 토대로 논의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나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이해충돌법에 대한 여러 기사를 살펴보고, 쟁점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더 빠르게 입법할 수 있었던 법을 국회가 여태까지 미뤘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LH 사태와 같은 큰 논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보궐 선거와 같은 정치권에 큰 이벤트가 겹치면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 시민단체들의 비판처럼, 의원들의 직무유기가 공직자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키운 측면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다. 2013년 김영란법안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있었음에도 거부한 정치권과 국회의 결과로 국민들에게 수많은 무력감을 주었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지난해 등장했던 여야 불문의 이해충돌 그리고 이번 LH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수많은 의혹으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완벽한 법적 장치를 완비할 순간이 다가왔다. 지금까지 횡행해온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각종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진국의 입법례를 볼 때, 이해충돌이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962년 제정된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를 위반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하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도 각각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기득권과 여야소속 따지지 말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좌동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몰아치는 與’, 한국경제, 2021.03.23, 지면 A6 [↑](#footnote-ref-1)
2. 채진원, ‘[채진원 칼럼]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할 때’, 2021.03.22 [↑](#footnote-ref-2)
3. 고동욱, ‘與, LH개혁·이해충돌방지법 속도전…단독처리 불사론도’, 2021.03.24 [↑](#footnote-ref-3)
4. 김보연, ‘LH사태에 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민간인 확대"…전문가 "과잉규제, 불가능해"’, 조선비즈 [↑](#footnote-ref-4)
5. 서영지, ‘이해충돌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공공기관임원’ 등 추가’, 한겨레 [↑](#footnote-ref-5)
6. 신용준, ‘정의당 배진교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부진정 소급적용해야"’, 뉴스 저널리즘 [↑](#footnote-ref-6)